공직선거법위반

[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. 10. 1. 2010고합44,52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5인

【검 사】김종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박석곤 외 8인

【주문】

]

- 1. 피고인 1을 벌금 500만 원에, 피고인 2(제2심 판결의 피고인 1)를 징역 10월에, 피고인 3(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2)을 벌금 90만 원에, 피고인 4를 벌금 300만 원에, 피고인 5, 피고인 6을 각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.
- 2. 피고인 1, 피고인 3, 피고인 4, 피고인 5, 피고인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6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- 3. 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4. 피고인 1, 피고인 3, 피고인 4, 피고인 5,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】 【이유】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